

100년 시대에
문퇴직을 위한
NH퇴직연금

NongHyup Bank Retirement Pension



NH Bank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교육자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 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선물 NH농협카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사용자)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업(사용자)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
농협은행은 교육위탁계약에 의해 가입자교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퇴직연금제도 관련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은퇴설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된 가입자교육 자료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 보셔서,
고객님의 소중한 퇴직자산 관리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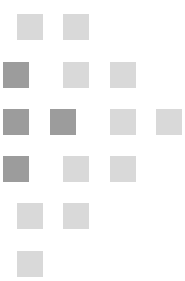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생 100세 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기간보다 돈 쓰는 기간이 더 긴 100세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H농협은행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고객보다 먼저 걱정하며
고민하고 대비하여 고객의 내일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H농협은행
임직원 일동



CONTENTS

01.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노후준비의 중요성	06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07
노후준비 기본전략	07
노후 필요자금 산출방법	08

02. 퇴직연금제도 이해

퇴직연금제도란?	10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10
개인형퇴직연금 (IRP)	13

03. 알면 유용한 퇴직연금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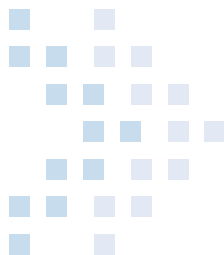
퇴직연금 절세전략	15
퇴직연금 운용전략	16

04. 퇴직급여 수령 안내

급여지급 절차 (IRP이전) 및 수급요건	19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20
기타 업무처리	21
퇴직연금 웹사이트 활용 방법	22

PART 01

NongHyup Bank Retirement 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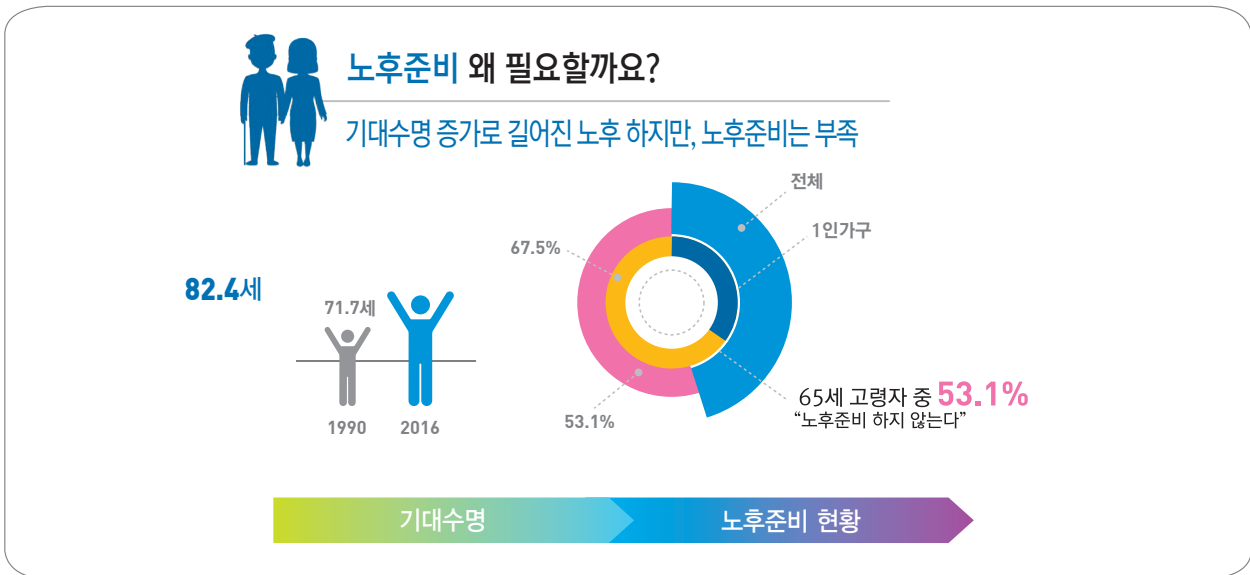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 노후준비의 중요성
-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 노후준비 기본전략
- 노후 필요자금 산출방법

노후준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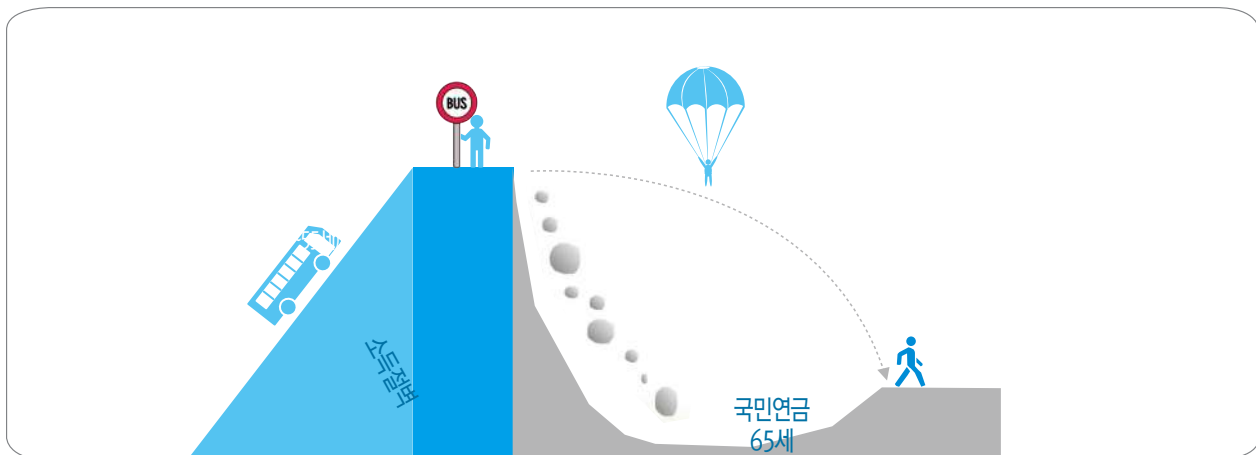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가입 등 노후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통계청-생명표, 2017고령자통계〉



특히, 일하는 기간보다 은퇴 후 노후기간이 더 길어져 개인의 노후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근속기간 6.4년 (출처:통계청,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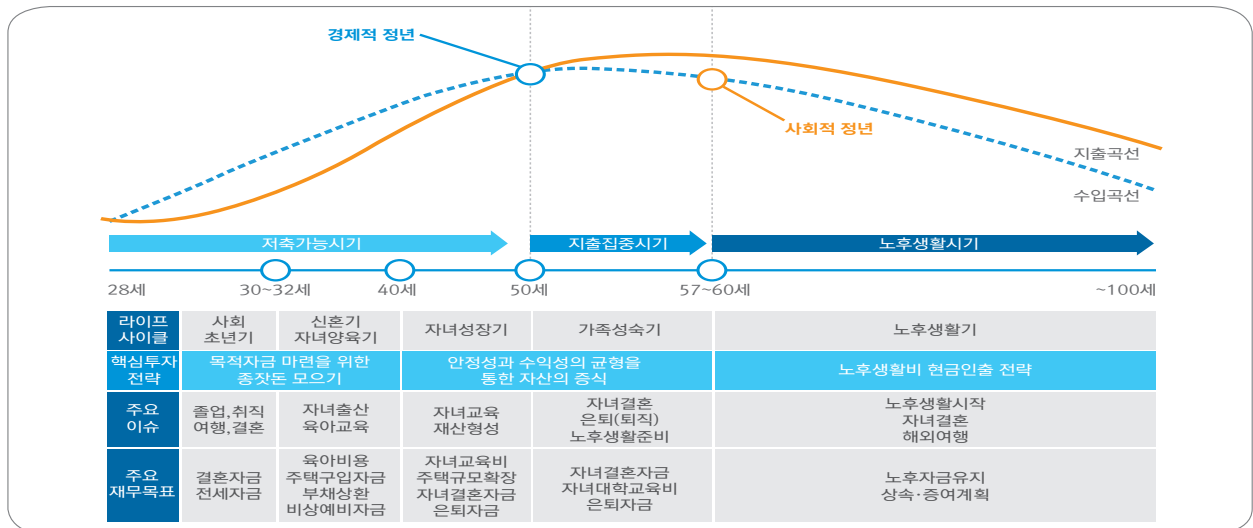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필요자금 증가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흐름을 고려하여 재무목표를 세우고, 자산·부채관리를 통해 행복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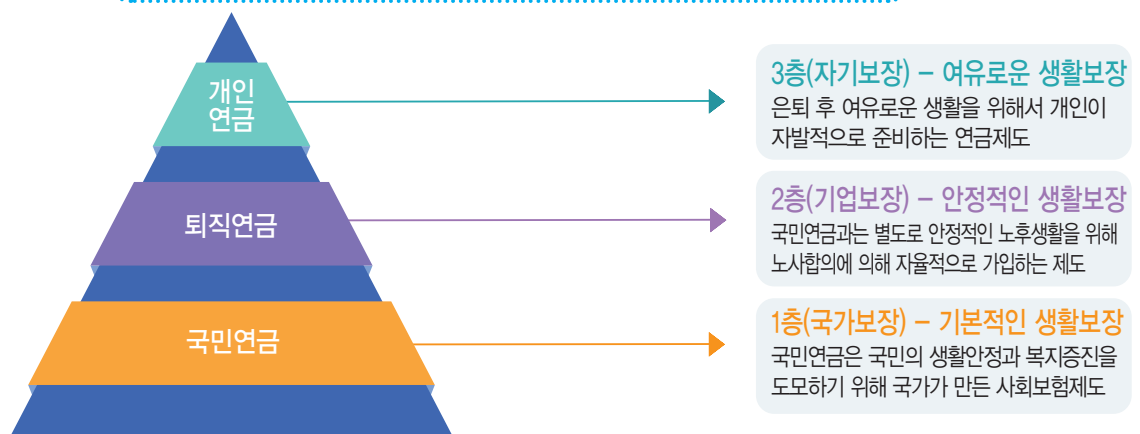
노후준비 기본전략

퇴직연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고령화시대 공적 사회보장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현재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소중히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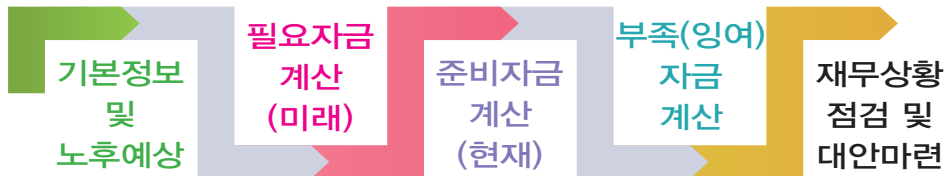
〈출처 : 금융감독원〉

- ◆ 한국의 노후보장은 3층 체계로서
1층 - 국민연금, 2층 - 퇴직연금, 3층 - 개인연금으로 구성



노후 필요자금 산출방법

체계적인 생애설계를 위하여 미래생활을 예측하고 현재 재무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237만원
개인 145만원

〈출처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15〉

필요자금(예시)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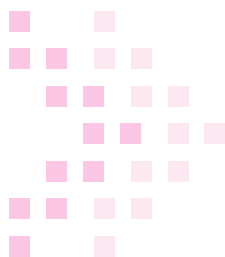
〈가정〉

- 연간 노후 생활비는 부부 적정생활비 기준 (237만)
- 소비자 물가상승률 : 1.3%(2012~2016년도 5개년 평균)
- 1년 정기예금 이자율 : 1.74%(2018년 3월 금융권 평균)
- 60세에 은퇴하여 평균수명인 82세까지 생존(통계청 2016)
- 60세까지 모은 은퇴자금은 연초1년간의 생활비를 제한 후 1년 만기 정기예금 계좌에 저축

60세 은퇴시점까지 준비할 예상금액은
현재 50세는 6억2천만원,
현재 40세는 7억1천만원.

PART 02

NongHyup Bank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이해

-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I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DC)

기업이 납입할 적립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확정된 제도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급여종류	퇴직소득을 개인형IRP로 과세이연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퇴직시		• 연금 : 만 55세 이상 및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 일시금 : 제한없음
퇴직급여수준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기간 (퇴직금제도와 동일)	연간 임금총액 × 1/12 ± 운용손익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지시 및 운용손익 귀속	사용자(회사)	가입자	가입자
개인 추가납입	불가	가능 ^{주)}	가능 ^{주)}
중도인출	불가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 최대 1,155천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는 납입금액의 13.2% 최대 924천원 세액공제 가능

※ 가입자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절세전략은 15page 참고

확정급여형(DB)

정기적인 적립금(퇴직충당금)을 기업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 **기업 적립금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I 최소적립금이상 적립의무 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말 적립해야하는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 적립금 비율(이하 '최소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구 분	2012~2013	2014~2015	2016~2018	2019~2020	2021년 1.1. 이후
최소 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및 이행

기업은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금융기관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
- 기업은 자금 조달 방안, 납부 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3년간 보존

I 적립금 초과분 처리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경우 기업은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150%를 초과하고 기업이 요구한 경우 금융기관은 150% 초과분을 기업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기업은 적립금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인별로 구분하여 적립합니다.

- **기업 적립금 수준** :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부

※ 임금과 연간임금총액의 범위

임금은 기업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퇴직급여 산정 제외 임금 : 일시적·불확정적인 성과급, 출장비 등 실비변상 금품

I 기업 적립금 납부시기 및 납입지연

기업은 규약에 정한대로 연 1회 이상 매년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부합니다.

• 적립금 납부기한 연장

DC형과 기업형IRP에 가입한 기업은 노사합의에 의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업이 정하여진 기일(규약에 따라 납입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미납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미납사실 및 연장된 납부기한 통지



※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 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 인정)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표준형 DC

I 표준형 DC 가입 방법

표준형 DC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가입방법

금융기관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을 미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준규약 사항

가입대상 기업, 제도 명칭,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 기준, 디폴트 옵션, 제도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 디폴트옵션 :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하여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규약에서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운용하거나 운용 방법을 정하는 기준

표준계약서 규정 사항

표준규약 내용(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지침, 디폴트옵션 등)의 이행, 계약의 해지 · 변경 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세제혜택 :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연간 7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DC 400만원	+	IRP/DC 300만원	=	700만원
세액공제	X 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				
	52만8000원	+	39만6000원	=	92만4000원
세액공제 ^{*)}	X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66만원	+	49만5000원	=	115만5000원

^{*)}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 납입한도 : 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 적립금 운용방법 :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 운용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 등
- 수령/중도해지 : · 수령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 중도해지 : 가능[과세는 아래 과세체계 참고]

소득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연금 수령 ^{*)}	일시금수령
퇴직소득	•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70%) • 분리과세	• 퇴직소득세 •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추가납입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5.5%~3.3%) • 타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 기타소득세 (16.5%) •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연금소득세(5.5%~3.3%), 분리과세]

^{*)} 연금수령은 만 55세이후부터 가능하며, 과세제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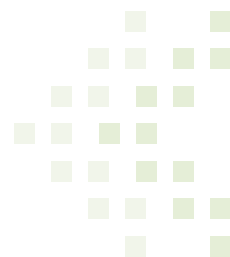
(단,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는 가입후 5년 & 만 55세 이상 동시에 충족)

^{**)}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PART 03

NongHyup Bank Retirement Pension



알면 유용한 퇴직연금 정보

- 퇴직연금 절세전략
- 퇴직연금 운용전략

퇴직연금 절세전략

I 퇴직연금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적립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비과세 하였다가 급여 수령시 과세합니다.

▶ 과세이연효과

- 퇴직연금은 소득원천별 과세체계가 상이하므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제상 유리합니다.

소득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일시금수령	연금 수령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text{연금소득세} = \frac{\text{이연퇴직소득}}{\text{연금수령액}} \times \text{연금수령액} \times 70\%$		
추가납입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주1)} (5.5 ~ 3.3%)		
		연령 및 유형	70세 미만	종신형 수령, 80세 미만
		세율	5.5%	4.4%
				80세 이상 3.3%

주1) 타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I 퇴직연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 외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연 300만원 별도 공제한도 추가
- 연금저축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 최대 1,155천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는 납입금액의 13.2% 최대 924천원 세액공제 가능

※예시

납입액		공제가 금액	절세액(지방소득세포함)	
			총급여액 구간별 적용	
연금저축 ^{주2)}	퇴직연금		5,500만원 이하(16.5%)	5,500만원 초과(13.2%)
0	700만원	700만원	1,155천원	924천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155천원	924천원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155천원	924천원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990천원	792천원
700만원	0	400만원	660천원	528천원

주2) 총급여액 1.2억원(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자는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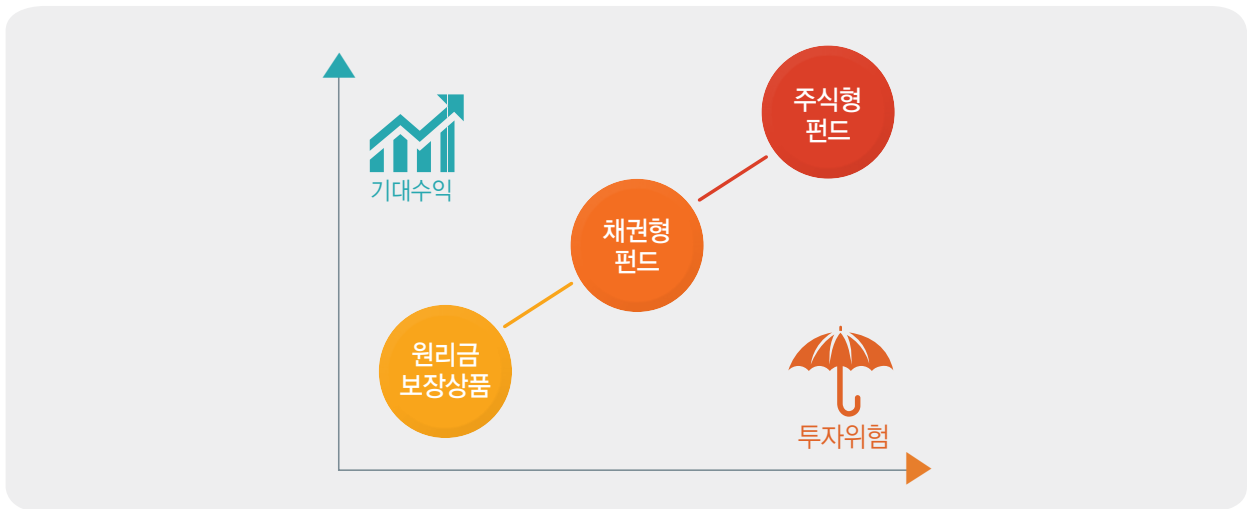
개인추가납입 원금 세액공제여부	일시금수령시		연금 수령시	
	원금	운용수익	원금	운용수익
여		기타소득세(16.5%)		연금소득세(5.5~3.3%)
부	비과세	기타소득세(16.5%)	비과세	연금소득세(5.5~3.3%)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연금 운용전략

I 분산투자 등 안정적 투자원칙

- 위험이란 기대수익과 실제 받을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투자위험도 높습니다.



- 다음의 3가지 투자원칙을 준수하여 기대수익률에 상응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안정적인 운용전략을 추천합니다.

÷	분산투자	투자상품을 분산하여 개별 금융상품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위험 분산
~	장기투자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의 마술로 인해 투자기간이 길수록 운용성과 상승
+	적립식 투자	투자시기를 분산(매입가격 평준화)하여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

-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투자과정을 '자산배분'이라 합니다.
자산구성 비율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I 운용방법별 수수료 체계 및 매도기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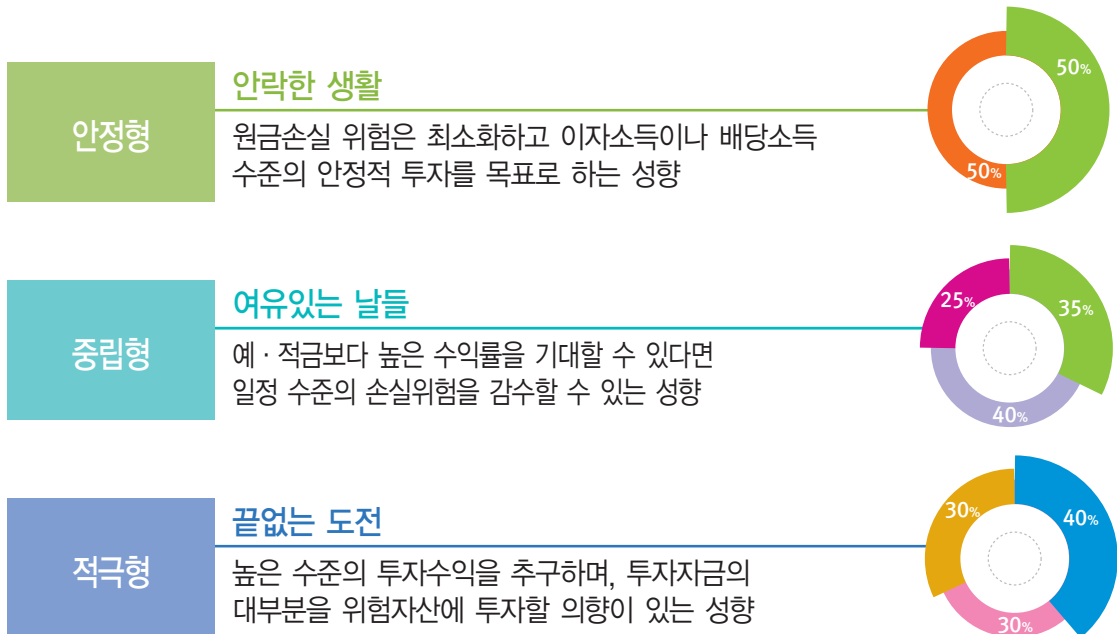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수수료	해당없음	환매수수료 ^{*)}
상품보수	해당없음	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 보수
매도기준가	해당없음	환매하는 펀드의 가격을 판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 - 상품별 적용일 상이

^{*)} 상품별 환매수수료 부과 형태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투자유형별 추천 포트폴리오

● 원리금보장 ● 국내채권형 ● 해외채권형 ● 국내주식혼합형 ● 해외채권혼합형 ● 국내주식형
● 해외주식형

(단위 : %)



※ 본 자료는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결과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I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에 따른 운용전략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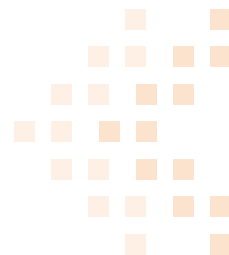
-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고,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유 하거나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ART 04

NongHyup Bank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 수령 안내

- 급여지급 절차 (IRP이전) 및 수급요건
-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기타 업무처리
- 퇴직연금 웹사이트 활용 방법



급여지급절차(IRP 이전) 및 수급요건

퇴직급여의 지급은 일반 요구불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IRP계정으로 자동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자동이전 예외 사유(개인형 IRP가 아닌 일반 요구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시 효과

- ▶ 퇴직금을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은퇴자금을 한 곳에 모아 은퇴자산플랜 관리가 용이합니다.
- ▶ 과세이연으로 운용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 선택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운용지시서를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등) 및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 및 투자비용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70/100 초과 불가
-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5. 7. 1.부터 전 금융기관에서 자사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운용이 제한되어 타사정기예금 또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지시 하여야 합니다.

I 수급요건

구분	내용
연금	• 연령요건 : 만 55세 이상 • 납입요건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단, 퇴직소득을 채원으로 연금수령하는 경우 제외) • 수령요건 : 연금수령한도^{주)} 내에서 인출
일시금	• 일시금 수급을 원하거나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text{연금수령한도}^{\text{주)}} =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평가총액}}{(\text{11-연금수령연차}^*)} \times 120\%$$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단, 13.3.0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13.3.01 이전 DB제도 가입자가 퇴직소득을 IRP로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 : 6년차 적용)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금수령 한도 미적용시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소득원천별 과세 :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

II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담보제공 : 적립금의 50%까지 (5천만원 한도)
- 중도인출 : 적립금의 100%까지 (DB제외)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사유 및 요건일 경우 고시하는 한도까지 가능)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요건(법정사유)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 근무동안 1회로 한정)
- ③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 ·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담보제공만 가능)
-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NH농협은행만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03. 현재 위 법정사유 중 ④의 경우는 적용 제외)

- 대출상품은 당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업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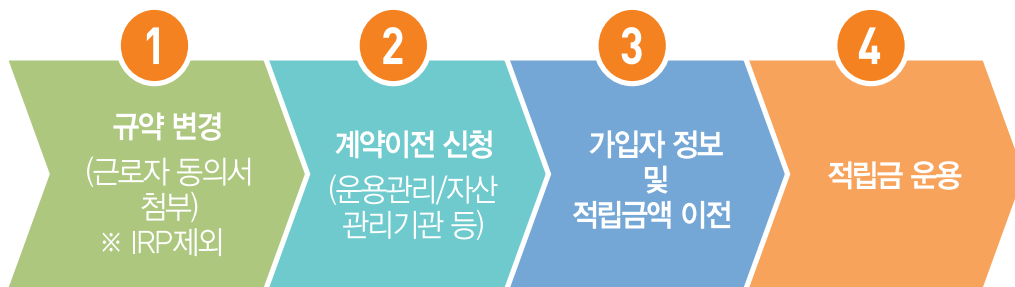
I 계약이전

계약이전이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변경, 기업체 변경에 따른 가입자 이동 등을 의미합니다.

※ 계약이전 사유

- ① 기업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기업형IRP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일부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③ 확정급여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 ④ 계열사 진출입, 합병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 ⑤ 금융기관이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⑥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계약이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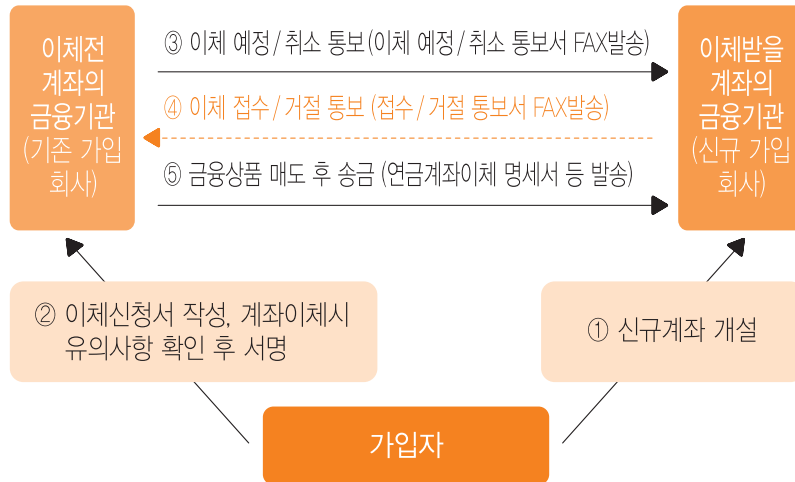
I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

중단	사유	일시적인 재정압박 및 기업의 법령 또는 규약위반으로 제도운영 중단
	업무처리	퇴직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교육 등 기본 업무유지
폐지	사유	폐업, 노사합의에 의한 폐지 결정,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제도를 폐지
	업무처리	계약 해지, 기존 적립금 개인형IRP로 이전(중간정산 개념)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I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간 이체

- 요건 : 55세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경과(퇴직금재원은 즉시), 전액이체
- 효과 :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은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 계좌로 이체
- 절차



I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도산 시 퇴직연금 청구방법 안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가 직접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청구 가능

- 청구절차 :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영업점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및 퇴직사실 판단 서류, 개인형IRP가입확인서 등 (퇴직사실 서류 예시 : 당해 사업자의 폐업 사실확인서, 4대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서, 체불금품확인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고객센터(1588-5995) 및 거래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웹사이트 활용 방법



- <https://pension.nonghyup.com>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타행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I NH농협은행퇴직연금 인터넷 접속방법

개인은 개인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와 사무담당자의 개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증서 발급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신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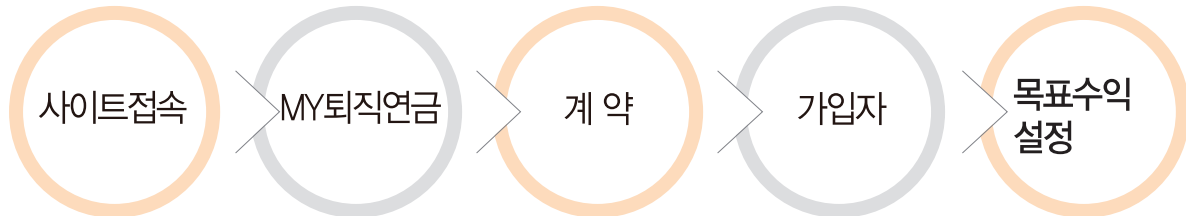
- ① 퇴직연금 로그인 클릭
- ② 개인/기업 로그인
- ③ 공인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I 알면 유용한 퇴직연금 사이트 주요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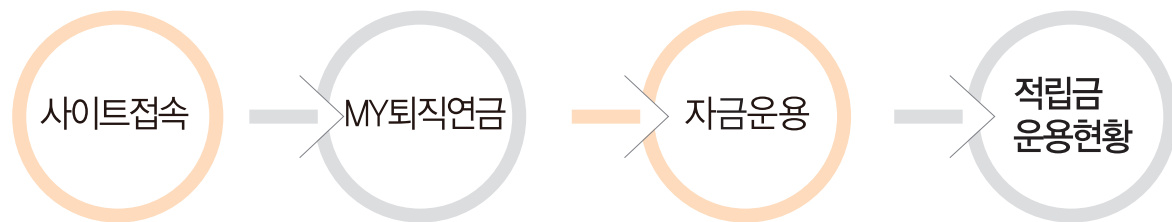
목표수익률 등록

운용 중인 수익증권의 본인이 희망하는
목표수익 / 손실 도달 시 통지를 희망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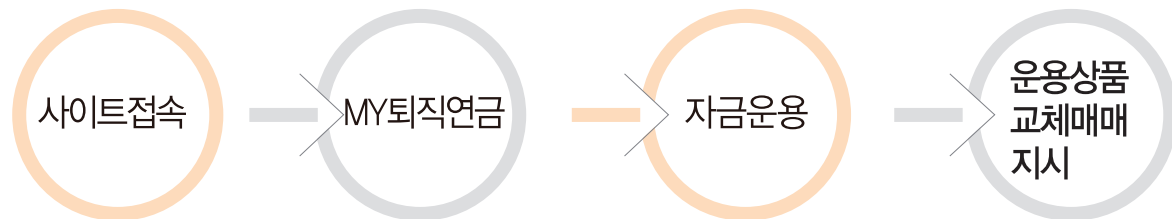
적립금운용 현황 조회

운용 중인 적립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을 확인하고자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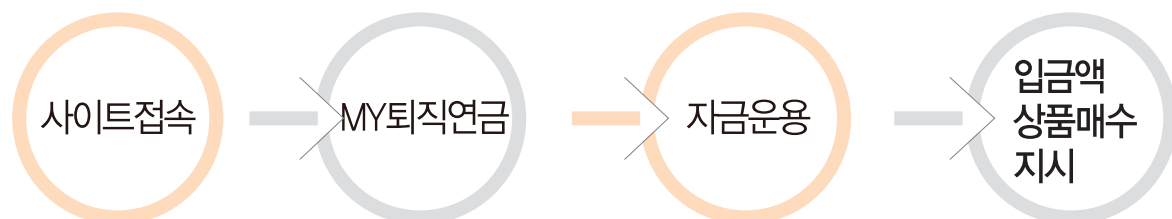
운용상품 교체매매(스위칭) 방법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 후
원하는 상품으로 재매입 함
(매도시 적립금은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운용비용 건별조회 등록

향후 입금되는 부담금의
운용비용을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때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전문상담센터 T. 1588-5995
전용 웹페이지 <https://pension.nonghyup.com>

NH퇴직연금 App



• 아이폰용



• 안드로이드용